

검 토 보 고 서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홍식

제천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3년 8월 29일

나. 회부일자 : 2023년 9월 7일

3.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제천 제4 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등을 도의회에 승인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위치·규모 :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일원 / 817,864m²(약25만평)
- 사업 기간 : 2023년 ~ 2029년
- 사업 방식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 및 사용방식
- 총 사업비 : 약 1,379억원 (조성비 722, 보상비 412, 기타 245)

나. 타당성 분석(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자료)

구분	주요내용				
재무성	(할인율)	PI>1.0	NPV(백만원)>0	IRR(>)>4.5	순현재가치(억원)
	(4.50%)	1.03	2,483백만원	5.80%	150억
정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의 필요성 / 지역낙후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지인 제천시 봉양읍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0.18로 수산면과 덕산면 등 이어 여덟 번 위험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위험판단결과 ‘고위험’ 으로 평가됨 - 제천시 지방소멸위험지수가 ‘고위험’ 지역으로 낙후된 지역으로 볼 수 있음 • 과급효과(억원, 명) 				
	지역별	생산유발(백만원)	부가가치유발(백만원)	고용유발(명)	
총 북	120,093	58,235	1,005		

5. 검토의견

- 가. 본 신규투자사업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라 충북개발공사가 신규투자하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의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도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절차상 적절하다고 보여짐.
- 나. 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제출한 “제천 제4산업단지 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을 위해 총 1,379억원이 투자되며, 재무 타당성은 수익성지수 1.03(PI>1.0)·순현재가치 2,483백만원(NPV>0)·내부수익률 5.80%(IRR>4.5%)로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됨.
- 다. 또한, 개발지내 입주업체 및 인구 유입으로 지방세 수입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므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 라. 아울러, 제천 제1산업단지, 제천 제2산업단지, 제천 제3산업단지와 인접해 있어 산업시설 연계기능 강화가 기대됨

마. 다만, 분양가 산정·보상비 및 공사비 인상·차입금이자율의 증가 등 사업 환경과 지역여건의 변동성으로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여건변화에 따른 불안정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철저한 계획 수립과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임.

바. 아울러 대내외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산업단지내 적합한 업종선정, 인근 산업단지와의 차별화 등 지역경제에 상승효과를 낼수 있도록 세밀한 투자유치전략이 요구됨.